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38
----------	------

제출년월일 : 2004.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시장의 권한(사무)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구소속 공무원의 인사, 민방위 업무에 관한 권한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함 (안 별표).
- 나.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권한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함 (안 별표).
- 다. 장례식장업에 대한 권한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함 (안 별표).
- 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권한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함 (안 별표).
- 마. 도로점용 허가,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함 (안 별표).
- 바. 공동주택불법건축물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함 (안 별표).
- 사. 구청장에게 위임했던 건축물 용도변경 및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중 일부를 시장에게 환원함 (안 별표).

□ 개정조례안 : 별 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 첨

- 지방자치법 제95조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별표중 구분란 “주민자치과” 앞에 “총무과”를 신설하고,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및 ‘수임기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총무과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연가계획 및 허가	· 안산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	구청장
		2. 병가 및 공가허가	· 동조례21조, 제22조	
	2. 구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발령, 전보, 휴직, 복직에 관한 사항 (다만, 6급의 휴직, 복직은 제외)	· 지방공무원법 제6조	구청장
		2. 정기 호봉승급 및 재획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3. 청원경찰 배치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의2	
	3. 민방위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직장민방위대 및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통합)편성, 개편, 해체, 이전, 명의변경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내지 제18조 ·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내지 제23조	구청장
		2. 민방위대원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1조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총무과		3. 직장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통지서의 작성 및 전달	· 동법시행령제23조	구청장
		4. 직장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의 교육훈련 면제 대상자 승인	· 동법시행령 제23조 의2	
		5. 직장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의 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 동법시행규칙제37조	
		6. 관내 직장민방위대장 지휘·감독	· 민방위기본법제20조	
		7. 직장민방위 대검열	· 동법제20조의2 · 동법시행령제22조 의2	
		8. 직장민방위대 및 기술지원대의 동원 및 유예	· 민방위기본법제22조 · 동법시행령제25조 · 동법시행규칙제39조 내지 제42조	
		9. 민방위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민방위기본법제34조	
		10. 공공용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의 지정·관리 및 대피시설 안내표지	·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동 별표중 구분란 “지역경제과” 를 “첨단산업경제과”로 하고, 위임사무명 “3.” 다음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첨단산업 경제과	4.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에 대한 개선명령 2. 안전관리자 관리 3. 사업자등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 등 5.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6. 보고·조사 등 7. 과태료의 부과·징수	· 액화석유가스안전 관리및사업법 제9조 · 동법 제14조 · 동법 제20조 · 동법 제29조 · 동법 제32조 · 동법 제35조 · 동법 제48조	구청장
	5.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 2.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3.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4. 안전관리자 관리 5. 과태료의 부과·징수	· 도시가스사업법 제5조 · 동법 제17조 · 동법 제27조 · 동법 제29조 · 동법 제54조	구청장

동 별표중 ‘환경위생과’ 의 위임사무명 “5.” 다음에 “6.”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위생과	6. 장례식장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사무)	1. 장례식장영업의 사업자등록 현황자료 유지·관리 등 2.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3. 청문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 · 동법 제27조 · 동법 제28조	구청장

동 별표중 ‘도시과’ 의 위임사무명 “1.” 다음에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과	2. 토지거래계약 하기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사후 실태조사 2. 과태료부과·징수	·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124조제2항 · 동법 제144조	구청장

동 별표중 ‘건설과’ 의 위임사무명 “4.” 를 다음과 같이 하고, “6.” 다음에 “7.”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설과	4.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굴착(형질변경)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 허가 2. 지하매설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3. 굴착(형질변경)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교통협의	·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124조제2항 · 동법 제144조 · 도로교통법 제65조	구청장

동 별표중 ‘건축과’ 의 위임사무명 “2.” 다음에 “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축과	3. 공동주택 불법건축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동주택 복리시설(단지내 상가 등) 의 무단 용도변경 및 증·개축에 대한 지도(단속)·감독	· 주택법 제91조	구청장

동 별표중 ‘허가과’의 위임사무명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2.” 다음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허가과	1.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물 용도변경 및 사용승인 (문화 및 접회시설, 묘지관련시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은 제외)	· 건축법 제14조	구청장
	3. 액화석유가스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안전관리자 신고업무	· 액화석유가스의안전 관리및사업법 제14조	
	4.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안전관리자 신고업무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총 무 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총무과장 윤 은
	담당·팀장 직위·성명	인사담당 이 기 용
	담당자 성명·전화	송순복 (행정 310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위임사무(제2조 관련)					<별표> 위임사무(제2조 관련)				
구분	위 임 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 거 법령	수 임 기관	구분	위 임 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 거 법령	수 임 기관
총무과	<신 설>				총무과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 의 관한	1. 연기계획 및 허가	· 인사 · 지방공무원 · 복무조례 · 제19조	구청장
							2. 평가 및 공기평가	· 동조제21 조 제22조	
						2. 구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다음의 관한	1.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별로 전보 승급 휴직 복직에 관한 사항 (단 6급의 휴직 복직 은 제외)	· 지방공무원 법 제5조	구청장
							2. 정기회봉 승급 및 재직장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 조	
							3. 청원경찰 배치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의2	
					3. 민방위업무에 관한 다음의 관한	1. 직장면밀위반 및 민 방위기술지원 대의 (통합) 편성 개편 해제 이전 명의 변경	· 민방위기본 법 제18조 ·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내지 제18조 · 동법시행규 칙 제103조의 2 내지 제23 조	구청장	
						2. 민방위대원 세부교육훈련기록 수립 및 시행	· 민방위기본 법시행규칙 제31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분	위 임 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 법령	수임 기관	구분	위 임 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 법령	수임 기관
총무과	<신 설>				총무과				구청장
						3. 직장민방의원의 교육훈련통지서의 작성 및 전달		동법시행령 제23조	
						4. 직장민방의원 및 기술지원대원의 교육훈련 면제 대상자 승인		동법시행령 제23조의2	
						5. 직장민방의원 및 기술지원대원 의 교육 훈련 불참자 조치		동법시행규칙 제37조	
						6. 관내 직장민방의원장 지휘감독		민방위기본법 제20조	
						7. 직장민방의원감찰		동법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8. 직장민방의원 및 기술지원대원의 동원 및 유예		민방위기본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39조 내지 제42조	
						9. 민방위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민방위기본법 제4조	
						10. 공공용재고시설 및 금수시설의 지정 관리 및 대피시설 안내표지		동법시행규칙 제 15조 제16조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분	위임 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거 법령	수임 기관	구분	위임 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거 법령	수임 기관
지역 경제과	<u><신 설></u>				첨단 산업 경제과	4.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액화석유가스 수요 지에 대한 개선명령 <u>인천 관리 및 사업법 제9조</u>	· 액화석유가스 인천 관리 및 사업법 제9조	구청장
							2. 안전관리자 관리	· 동법 제14조	
							3. 사업자등에 대한 정기(주기)검사	· 동법 제20조	
							4.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의 검사 등	· 동법 제21조	
							5. 위험설지를 위한 조치	· 동법 제32조	
							6. 보고·조사 등	· 동법 제35조	
							7. 과태료의 부과·징수	· 동법 제38조	
					5.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사용금리 및 원상점사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사용금리 및 원상점사	· 도시가스사업 법 제15조	
							2.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동법 제17조	
							3.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 동법 제21조	
							4. 안전관리자 관리	· 동법 제29조	
							5. 과태료의 부과·징수	· 동법 제34조	
환경 위생과	<u><신 설></u>				환경 위생과	6. 장례식장영업에 대 한 다음의 권한(사무) 무	1. 장례식장영업의 사업자등록 현황자료 유지 관리 등	· 장례식장영업 법률제25조	구청장
							2.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장명령	· 동법 제27조	
							3. 청문	동법 제28조	
도시과	<u><신 설></u>				도시과	2. 토지거래계약 허 가에 관한 다음의 권 한	1. 사후 실태조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124조제2항	구청장
							2. 과태료부과·징수	· 동법 제144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분	위임 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거 법령	수임 기관	구분	위임 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거 법령	수임 기관	
건설과	4. 도로점용(글자) 허가	1. 도로점용(글자) 허가	도로법 제40조	구청	건설과	4.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글자(형질변경)공사 를 수반하는 도로점용 허가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구청장	
		2. 도로글자 교통 협의	도로 교통 법 제55조				2. 지하매설물 도로점 용료 부과 장수	동법 제144 조		
	<신 설>						3. 글자(형질변경)공사 를 수반하는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교통협의	도로교통법 제55조		
						7. 도로의 유지·관리 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운행제한 차량의 적 재·정속도 및 관계서류 의 제출요구	도로법 제54 조제2항		
건축과	<신 설>					건축과	3. 공동주택 불법건축 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동주택 복리시설 (단위내 삶가 등)의 무 단 용도변경 및 증·개 축에 대한 지도(단속)· 감독	주택법 제19조	구청장
허가과	<신 설>					허가과	1.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물 용도변경 및 사용승인 (문화 및 접화시설 묘지판란시설 의료시설 설증 장례식장을 제외)	건축법 제14 조	구청장
							3. 액화석유가스사용 지침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인천관리자 신고업무	액화석유가스 의 인천 관리 및 사업법 제14조	
							4. 특정가스사용시설 의 사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인천관리자 신고업무	도시가스사업 법 제20조	